

< 2014년 2월 14일 시행 >

내국신용장 매입추심 전자화 이용 업무지침

【 업체 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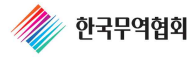
2014. 1. 14

【 차례 】

I. 내국신용장 전자화 시행	1
II. 업무절차별 이용 안내	4
III. 서비스 이용 방법	14
IV. 관련 전자문서	16

[첨부]

한국은행 금융증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18
----------------------------------	----



내국신용장 취급 외국환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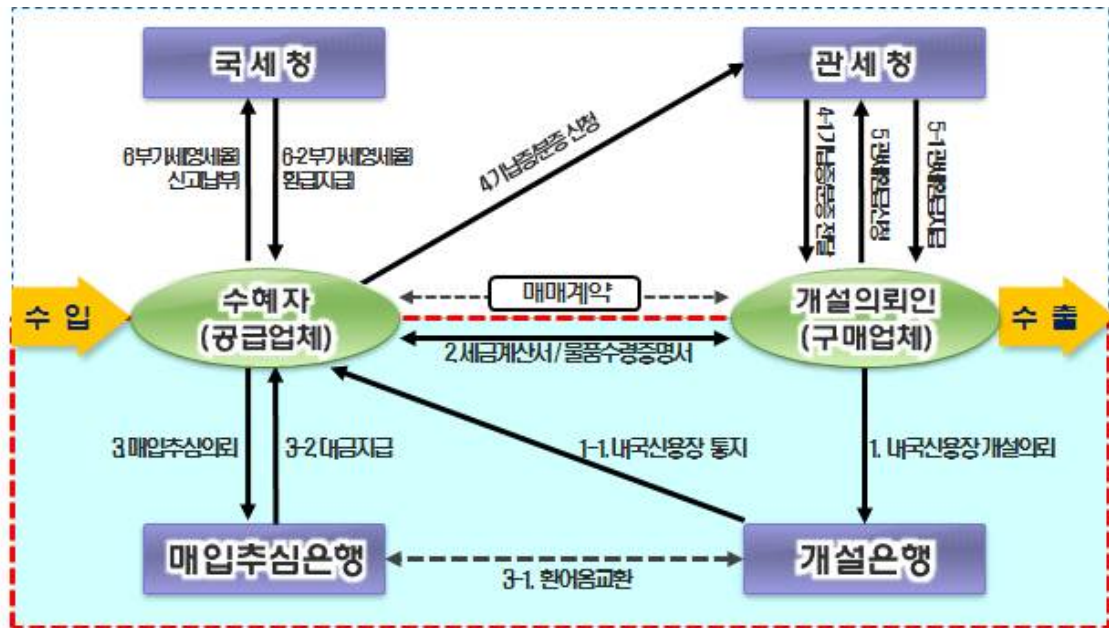
본 업무지침은 2014.1.14 작성 기준으로서, 세부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I 내국신용장 전자화 시행

1. 내국신용장 개요

□ 내국신용장은 수출업자가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국내에서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은행이 지급·보증한 국내용 신용장

<내국신용장 개념>



□ 내국신용장 용도

개설의뢰인 (구매자)	수혜자 (공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용 구매자금 대출 등 무역금융 수혜 - 은행의 지급 보증 - 수출용 원자재의 확실한 조달 보장 - 관세환급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으로 인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은행의 지급보증으로 물품공급 대금의 안전한 회수 보장 - 무역금융 용자대상 증빙으로 인정(무역금융 수혜가능)

2. 내국신용장 전자화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은행은 무역업체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여개 시중은행과 공동으로 내국신용장 전면 전자화 시행

구분	내용	시행시기	근거규정
개설/통지	내국신용장 개설 신청·개설, 통지 를 전자 무역기반시설을 통한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일원화	2013년 2월1일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운용세칙 제12조, 제15조
매입/추심	내국신용장 환어음을 폐지하고, 내국신용장 결제 가 전자적으로 작성·전송된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통해 처리	2014년 2월14일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운용세칙 제16조, 운용절차 제21조

- ※ 근거 규정: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운용세칙」
- ※ 내국신용장 취급 외국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 2013년 2월 1일 내국신용장 개설/통지 전자화에 이어, 2014년 2월 14일부터 매입추심 관련업무까지 내국신용장 전체 업무가 은행방문 없이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전자적으로 진행



※ 국가 전자무역 기반시설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무역기반 사업자인 KNET 이 운영하며, 유티레이드허브(www.utradehub.or.kr)는 정부의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축하고 KNET 이 운영하는 전자무역 단일창구임

3. 시행 일정

- 전자문서 변경사항 적용: 2014년 1월 17일 0시 (‘IV. 관련 전자문서’ 참조)
- 매입추심 전자화 서비스(유티레이드허브·uLocal) 시범오픈: 2014년 1월 17일
- ※ 전문 S/W 또는 자체구축 시스템 등 기타서비스 이용자는 해당 개발업체에 적용 일정 별도 문의
- 매입추심 전자화 전면시행: 2014년 2월 14일 0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운용세척 부칙)

4. 업무 개선효과

- 종이서류,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접속만으로 모든 내국신용장업무 처리
- 구매자-공급자-은행 등 관계당사자간 개설~매입까지 내국신용장 전체업무 전자화
- 모든 내국신용장 취급 외국환은행과 내국신용장 업무처리 가능
- 국세청 부가세 영세율 신고자료 자동전송 및 명세서 출력

II 업무절차별 이용안내

1. 개요

□ 내국신용장 개설·조건변경에서 통지, 세금계산서 발행·수령,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수령, 매입추심의뢰까지 내국신용장 업무 전과정 전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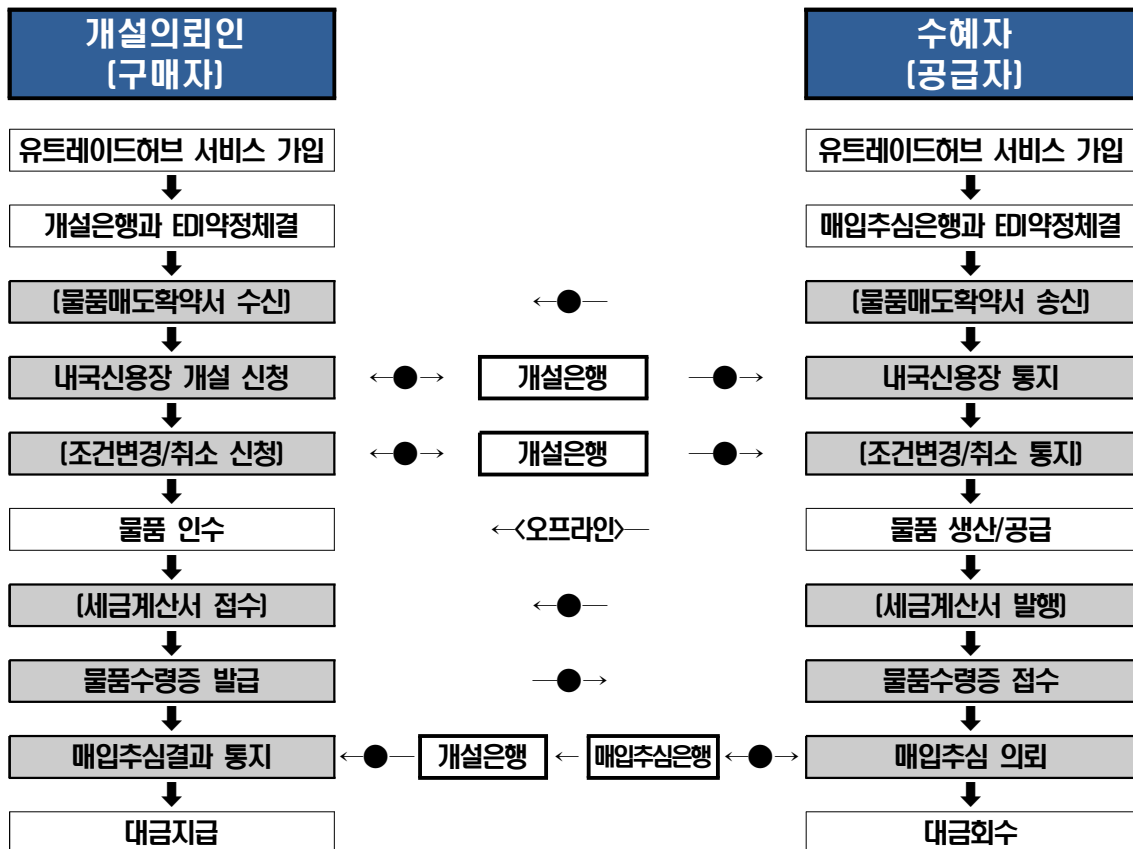
○ 개설의뢰인(구매자): 물품매도확약서 수신, 내국신용장 개설*, 조건변경 신청*, 세금계산서* 수령, 물품수령증명서 발급* 등

○ 수혜자(공급자): 물품매도확약서 송신, 내국신용장 통지*, 조건변경 통지*, 세금계산서* 발행, 물품수령증명서 수령*, 매입추심의뢰* 등

* 전자화 필수업무

* 세금계산서는 별도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이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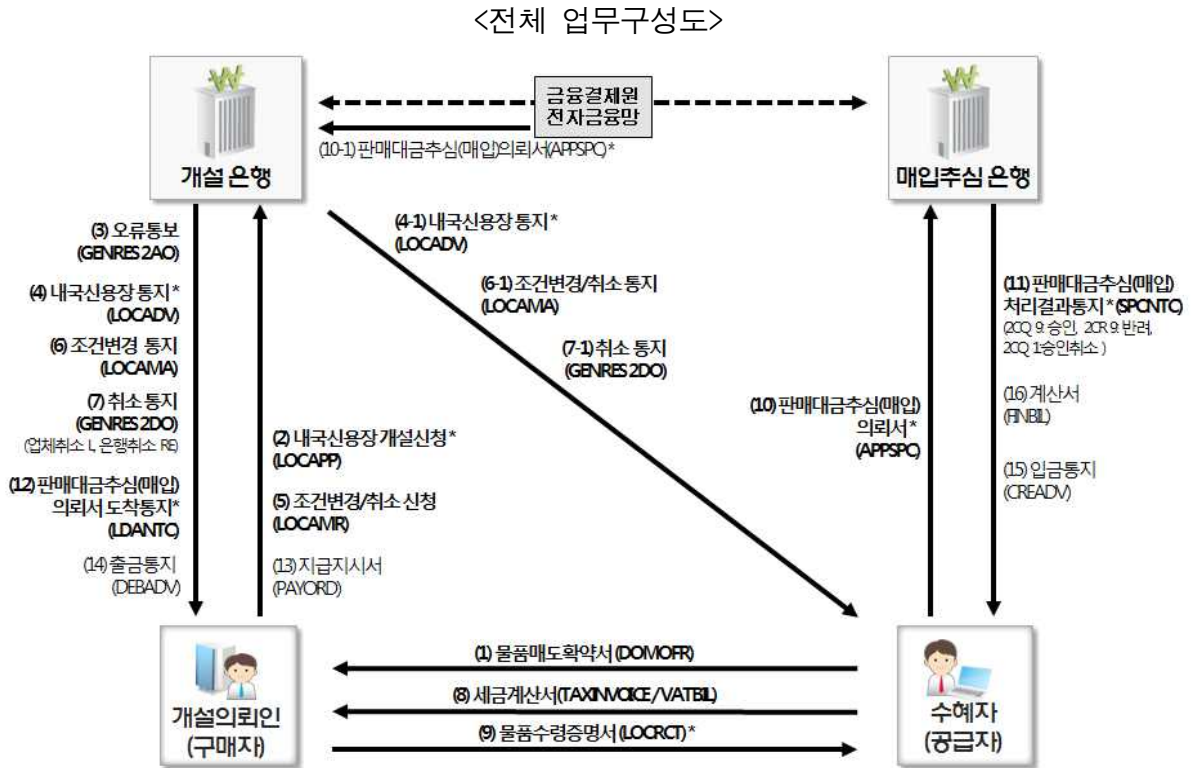
<업무처리 절차>



* ● : 전자무역기반시설(KTNET)

* () : 선택 업무

2. 상세 업무절차



* 필수업무

가. 기반시설 가입 및 은행 EDI 약정체결

○ 개요

- 내국신용장 업무처리를 위해 개설횰뢰인(구매자) 및 수혜자(공급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통한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반시설(KTNET)에 사전에 가입해야 함

*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 업무 절차

- ① 이용업체는 유티레이드허브 사이트(www.uTradeHub.or.kr)에서 회원가입 또는 KTNET 전자무역서비스* 신청

* KTNET(www.ktnet.com) 고객지원센터 자료실에서 「EDI 통합신청서」를 다운로드·작성하여 KTNET 고객지원센터(☎1566-2119 FAX: 02-6000-2137)에 제출

② 이용업체는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EDI 약정체결*

* 개설의뢰인(구매자)은 개설은행과 EDI 약정을 체결하고, 수혜자(공급자)는 매입
추심은행과 EDI 약정 체결

※ 은행 EDI 약정체결시 은행 제출서류 (세부사항은 거래은행 문의)

- KNET 또는 유티레이드허브 가입승인서 1부
- 전자무역업무 이용(신규·변경·해지) 신청서(은행서식)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인감증명서) 1부

③ 이용업체는 거래은행과의 EDI 약정체결 내역을 유티레이드허브 등 가입한 서
비스에 등록

※ 은행 EDI 약정통보서 (EDIADV)

- 이용업체가 은행창구에서 EDI 약정을 체결한 후 이용시스템에 약정결과 등록
실수에 따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약정체결 정보를 업체에게 전자
문서로 통보하는 문서임
- 약정은행(지점)은 모든 EDI 약정건(신규,변경,취소)에 대해 EDIADV 전자문서를
통해 업체에게 전송하며, 기반시설은 은행이 전송한 약정정보를 유티레이드
허브에 자동 등록함

* 이용업체는 유티레이드허브 등 이용 서비스에서 약정정보 정상 등록여부 확
인 필수

나. 내국신용장 개설 신청

○ 개요

- 관련 규정*에 따라 은행 영업점 창구발급은 폐지되고,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
해 전자 개설만 가능(13년 2월 1일부터 시행중)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 12 조)

○ 업무절차

① 내국신용장 개설신청서(LOCAPP) 작성 및 개설은행에 전송

※ 내국신용장 개설 시 은행 제출서류

1. 공급자발행 물품매도확약서 (필요시)
2. 해당 내국신용장의 개설근거 (원수출신용장 등)

※ 물품매도확약서는 수혜자가 작성하여 개설의뢰인에게 전자문서로 전송 가능

② 개설은행은 심사 후 개설의뢰인에게 내국신용장통지서(LOCADV) 전송

- ③ 수혜자 통지를 위해 개설은행 및 전자무역기반시설(KTNET)은 수혜자에게 내국 신용장통지서(LOCADV)를 전송

○ 기타 사항

- 개설의뢰인은 개설신청 이전에 KTNET 가입 및 개설은행과 EDI 약정 필수
- 개설신청시 수혜자(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수 입력항목이며, 수혜자 자동 통지를 위해서는 수혜자의 수발신 식별자 입력해야 함
- 수혜자 수발신식별자 미입력 등으로 통지가 안 된 경우, 수혜자는 uLocal 에 접속 하여 내국신용장 조회 가능
- 개설신청시 수혜자 이메일을 입력한 경우 기반시설은 수혜자에게 내국신용장 통지알림 이메일 발송
- 내국신용장 개설 이전에 이미 물품공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 대금결제를 위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음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 제 17 조)
- 개설의뢰서 작성, 심사 및 승인, 제출서류 등 은행 고유업무 관련사항은 개설은행에 별도 문의

<내국신용장 조건>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 14 조)

1. 양도가 불가능한 취소불능신용장일 것
2. 표시통화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는 것일 것
 - 가. 원화
 - 나. 외화
 - 다. 원화로 하되 개설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외화금액을 부기
3. 내국신용장의 금액은 물품대금 전액으로 하고, 제 2 호 다목에 의한 내국신용장의 경우 금액은 부기외화금액을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매입일(추심시는 추심의뢰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일 것
4. 물품의 인도기일은 대응수출 또는 물품공급이 원활히 이행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책정된 것일 것
5. 유효기일은 물품의 인도기일에 최장 10 일을 가산한 기일 이내일 것. 다만, 원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하여 개설되는 내국신용장의 유효기일은 대응되는 원수출신용장 등의 선적 또는 인도기일 이전이어야 한다.
6. 서류제시기간은 물품수량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장 5 영업일 범위내에서 책정된 것일 것.
7.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형식은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고, 개설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며 일람출급식일 것
8.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대금결제방식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일 것
 - 가. 일람불 내국신용장 : 개설의뢰인이 자체자금으로 결제하는 방식
 - 나. 기한부 내국신용장 : 개설은행이 융자하여 결제하는 방식
9.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발행조건은 원수출신용장 매입조건부 결제 등 수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닐 것. 다만, 선박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산업설비의 수출을 위하여 개설되는 완제품내국신용장의 경우에는 원수출신용장 등의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제조공정별 분할지급조건으로 할 수 있다.

10. 제 1 호부터 제 9 호까지의 사항 외의 조건에 관하여는 국제상공회의소(ICC) 제정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를 준용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일 것

다. 내국신용장 오류통보

○ 개요

-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 내국신용장을 개설신청하거나 조건변경 신청 후, 오류사항 발생시 개설은행에서 오류통보서를 이용해 개설의뢰인에게 통보

○ 업무 절차

- ① 개설의뢰인의 개설신청 또는 조건변경/취소 신청
- ② 개설은행은 오류사항 발생시 오류통보서(GENRES_2AO)를 개설의뢰인에게 전송
 - ※ 개설은행은 '9.RFF' 항목에 내국신용장 개설신청서(LOCAPP) 번호 입력

라. 내국신용장 통지 (개설 · 조건변경 · 취소통지)

○ 개요

- 외국환은행은 개설한 내국신용장을 개설의뢰인 및 수혜자에게 통지하고 전자적으로 전달하여야 함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 15 조)
- 전자무역 기반시설은 수혜자가 전자문서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내국신용장 자동통지 서비스 제공

○ 업무 절차

- ① **기반시설의 자동통지** : 기반시설이 개설신청서 상의 수혜자 수발신식별자로 개설은행과 수혜자간 EDI 약정 체결없이도 수혜자에게 전자문서로 자동 통지
 - ※ 개설의뢰인은 개설신청시 수혜자의 수발신식별자를 반드시 입력해야 함
 - ※ 기반시설은 은행의 동보통지건을 제외한 모든 내국신용장을 수혜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함
 - ※ 기반시설 자동통지 적용업무: 내국신용장 통지, 조건변경 통지, 취소통지 등
- ② **개설은행의 동보통지** : 개설은행이 개설신청서 상의 수혜자 수발신식별자로 개설은행과 EDI 약정이 체결된 수혜자에게 전자문서로 통지
 - ※ 수혜자는 개설은행과 EDI 약정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 ※ 개설의뢰인은 개설신청시 수혜자의 수발신식별자를 반드시 입력해야 함

③ **uLocal 통지** : 수혜자는 uLocal 에 가입·접속하여 수혜자 수발신식별자 입력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통지내용 조회 및 후속업무 처리 가능

※ uLocal ‘통지문서 수동전송’ 기능으로 별도 수혜자 시스템으로 수동 또는 자동 전송 가능

○ 기타사항

- 거래상대방 이메일 알림: 신청서에 거래상대방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경우 기반시설이 이메일을 통해 전자문서 도착 알림 제공

(※알림대상: 내국신용장 통지, 조건변경 통지, 취소통지, 매입추심의뢰 도착통지 등)

마. 내국신용장 조건변경 신청

○ 개요

- 내국신용장 기본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계당사자(개설의뢰인, 수혜자, 개설은행)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을 변경할 수 있음

○ 업무 절차

① 개설의뢰인은 내국신용장 조건변경신청서(LOCAMR) 작성 및 개설은행 전송

② 은행은 개설의뢰인에게 내국신용장조건변경통지서(LOCAMA) 통지

※ 은행 제출 서류 (필요시)

· 조건변경 동의서 (개설의뢰인 및 수혜자의 쌍방 합의)

· 기타 은행요청 서류 (송장, 원 수출신용장 등)

○ 기타사항

- 수혜자에 대한 내국신용장 조건변경 통지는 ‘다. 내국신용장 통지’ 절차에 준함 (※기반시설 자동통지, 은행 동보통지, uLocal 통지 등)

- 조건변경 신청서 작성, 심사 및 승인, 동의서, 제출서류 등 은행 고유업무 관련 사항은 개설은행에 별도 문의

바. 내국신용장 개설 취소

○ 개요

- 내국신용장 개설신청의 취소 또는 개설취소를 위해 개설의뢰인 또는 은행이 개설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업무 절차

- ① 개설의뢰인은 내국신용장 조건변경신청서(LOCAMR)의 취소기능(기능코드: 3)을 선택하여 개설은행에 전송
- ② 은행은 내국신용장 취소통보서(GENRES_2DO, 기능코드 L)를 통해 개설의뢰인 및 수혜자에게 취소 통지
 - 개설의뢰인의 취소신청 없이 은행이 직접 취소처리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취소통보서(GENRES_2DO, 기능코드 RE)를 이용

○ 기타 사항

- 수혜자에 대한 내국신용장 취소 통지는 ‘다. 내국신용장 통지’ 절차에 준함 (※기반시설 자동통지, 은행 동보통지, uLocal 통지 등)
- 개설취소 신청은 조건변경 절차에 준하여 개설은행에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

사. 세금계산서

○ 개요

- 수혜자(공급자)는 내국신용장 조건에 따라 물품공급 후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추심 의뢰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첨부 또는 직접입력하여 매입추심은행에 전송

○ 업무 절차

- 공급자(수혜자)는 유티레이드허브에서 전자세금계산서(국세청 전송) 또는 전자무역용 세금계산서(VATBIL)를 발행하여 구매자에게 전자문서(EDI)로 전달
 - ※ 다음 중 택일
 -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전송 (※ 구매자 미전송)
 - ② 공급받는자 전송 (※ 구매자에게 EDI 세금계산서(VATBIL) 전송)
 - ③ 둘다 전송 (※ ①+②)
- 유티레이드허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공급자(수혜자)가 매입추심의뢰시 세금계산서 정보를 간편하게 첨부 가능
- 별도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수혜자는 매입추심의뢰시 해당 세금계산서 정보를 직접 입력함

○ 기타사항

- 업체에서 이용 중인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와 관계없이, 물품수령증명서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작성시에 세금계산서 정보 직접입력 가능
- 물품수령증명서 상 세금계산서는 선택 입력사항이나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세금계산서 정보는 필수 입력사항임 (※물품수령증명서 상의 세금계산서 정보 입력시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상의 세금계산서 정보와 상호 일치해야 함)
- 세금계산서의 구매자와 내국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은 일치하여야 함

아. 물품수령증명서 발급

○ 개요

- 물품수령증명서는 물품을 공급받은 구매자(개설의뢰인)가 공급자(수혜자)에게 발급하며, 수혜자의 매입추심의뢰서 매입추심은행에 제출하는 필수 서류임
- 매입추심 전자화 시행('14.2.14)에 따라 구매자와 공급자는 물품수령증명서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송수신 해야 함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 제 22 조)

○ 업무 절차

- 구매자·공급자 각각 거래 상대방의 약정사항을 시스템에 등록
- 구매자(개설의뢰인)는 물품인수 후 물품수령증명서(LOCRCCT)을 작성하여 공급자(수혜자)에게 전송

 ※ 물품수령증명서 입력시 공급자(수혜자)의 수발신식별자 필수 입력
 ※ 전자무역기반시설은 물품수령증명서의 중복 발급 등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물품수령증명서 발급번호 중복여부를 체크하며, 중복시 개설의뢰인에게 오류 통보서(GENRES_961)를 전송함

○ 기타사항

- 개설의뢰인은 수혜자의 매입추심의뢰 이전에 물품수령증명서를 전자무역기반시설(KTNET)을 통해 사전에 전자적으로 전달해야 함

 ※ 매입추심의뢰 신청 이전에 물품수령증명서가 전자적으로 발급되어있지 않은 경우 추심매입의뢰 진행이 불가함
- 물품수령증명서상의 물품명세 대량업로드 기능 제공
- 구매자(개설의뢰인)는 공급자(수혜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부터 10 일 이내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함. 단,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부터 구매시는 제한 없음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 19 조)

- ※ 물품인수일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는 일치해야 함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은 직접 입력가능)
- ※ 물품수령증명서는 세금계산서 건별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함 (단, 분할공급 조건인 경우에는 분할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물품수령증명서 발급가능)
- 수혜자는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로 부터 서류제시기간(최장 5 영업일) 이내에 매입추심 의뢰해야 함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운용세칙 제 14 조)

자. 매입추심 의뢰 및 결과 통지

○ 개요

- 내국신용장의 수혜자가 물품공급을 완료하고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물품대금의 회수를 위해 거래은행(매입추심은행)에 매입(또는 추심)을 의뢰하는 절차임
- 2014.2.14.부터 매입추심 관련절차가 전면 전자화되며, 은행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추심·매입은 불가함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 16 조, 동 절차 제 21 조)

○ 업무 절차

- ① 수혜자는 매입추심은행에 ‘판매대금추심(매입)의뢰서’ (APPSPC)를 작성하여 전송 (2BJ:매입, 2BK:추심)
 - ※ 판매대금추심의뢰서(APPSPC) 작성시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사전에 내국신용장과 물품수령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수신받아야 함 (세금계산서는 직접입력 가능)
 - ※ 전자무역 기반시설은 수혜자가 외국환은행에 전송하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APPSPC)와 구매자발급 물품수령증명서(LOCRCCT)상의 정보를 상호 비교하여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외국환은행에 전송함 (검증 불일치하는 경우 수혜자에게 오류통보 자동전송)
 - ※ 매입의뢰시 첨부한 물품수령증명서는 다른 매입추심건으로 중복 사용 불가 (매입추심은행의 매입추심의뢰 오류통보 또는 승인취소 후에는 재사용 가능)
- ② 매입추심 결과 통지
 - 매입추심 정상 승인의 경우: 매입추심은행은 매입추심 승인시 판매대금추심(매입)응답서(SPCNTC)의 정상통보(2CQ, 기능코드 9)를 수혜자에게 통지
 - 수혜자의 매입추심의뢰에 대한 오류통보의 경우: 은행은 판매대금추심(매입)응답서(SPCNTC)의 오류통보(2CR, 기능코드 9)를 통해 수혜자에게 전송

○ 기타사항

-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상의 세금계산서는 유티레이드허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거나 세금계산서 정보를 직접 입력함
- ※ 세금계산서 직접 입력시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음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운용세칙 제 19 조)
- 은행의 매입추심의뢰 오류통보 이후 수혜자는 재매입 의뢰시 물품수령증명서 재사용 가능
-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작성, 심사 및 승인, 하자여부, 제출서류 등 은행 고유업무 관련사항은 매입추심은행에 별도 문의

<내국신용장의 결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운용세칙 제 16 조)

- ①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거절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 따라 결제하여야 한다.
 - 1.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추심의뢰일이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의 유효기일을 경과한 경우
 - 2. 전자문서교환방식 물품수령증명서상의 물품명세가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상의 대표물품명세와 불일치한 경우
 - 3. 판매대금추심의뢰서와 전자문서교환방식 물품수령증명서가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상의 기타 조건 등과 불일치한 경우
- ③ 개설은행은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거절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그 내국신용장의 관계당사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 따라 결제할 수 있다.

차. 매입추심 승인의 취소

○ 업무 개요

- 매입추심은행은 수혜자에게 판매대금추심(매입)응답서(SPCNTC)를 전송하여 매입추심을 승인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매입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통보를 접수한 수혜자는 매입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 가능

○ 업무 절차

- 매입추심은행은 판매대금추심(매입)응답서(SPCNTC)의 승인취소(2CQ 기능코드 1)를 통해 수혜자에게 전송

※ 은행의 매입추심의뢰 오류통보 또는 매입승인 취소통지 이후에는 해당 물품 수령증명서 재사용 가능

카. 전자화 시행관련 예외사항

- 물품수령증명서가 시행일 이전에(2014.2.13.일까지) 서류로 발급된 경우에 한해, 2014.2.24 일 매입분까지 기존 내국신용장 환어음을 이용해 은행창구를 통해 매입추심할 수 있음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운용세척 부칙)

Ⅲ 서비스 이용방법

1. 서비스 이용 방식

- 유티레이드허브 (www.utradehub.or.kr) (문의: KNET 1566-2119)

가. uLocal 내국신용장 통합서비스

- 내국신용장 전용서비스로서 구매자·공급자별로 업무절차에 따라 편리하게 이용 가능 (이용자의 사업자번호 기준)
- 유티레이드허브 메인화면에서 ‘내국신용장서비스’ 메뉴로 접속하거나 ‘ulocalc.utradehub.or.kr’ 로 직접 접속

※ 제공 서비스 : 업무진행현황, 물품매도확약서, 내국신용장 개설/통지, 조건변경 신청/통지, 세금계산서 발행/통지, 물품수령증명서 발급/통지, 매입추심의뢰, 매입결과통지, 개설잔액 조회, 기일도래/경과 내역, 하자검증, 영세율 신고자료조회, 전자발급명세서, 통계, 은행용 매입추심지원서비스 등

나. 무역포탈

- 수출, 수입,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 다양한 업무 이용 가능
- 유티레이드허브 메인화면에서 ‘무역포탈’ 메뉴로 접속

※ 유티레이드허브 (www.utradehub.or.kr) 가입시 ‘내국신용장 전용서비스’ 과 ‘무역포탈’ 모두 이용 가능 (단, 건별요금제 선택시 ‘내국신용장 전용서비스’ 만 이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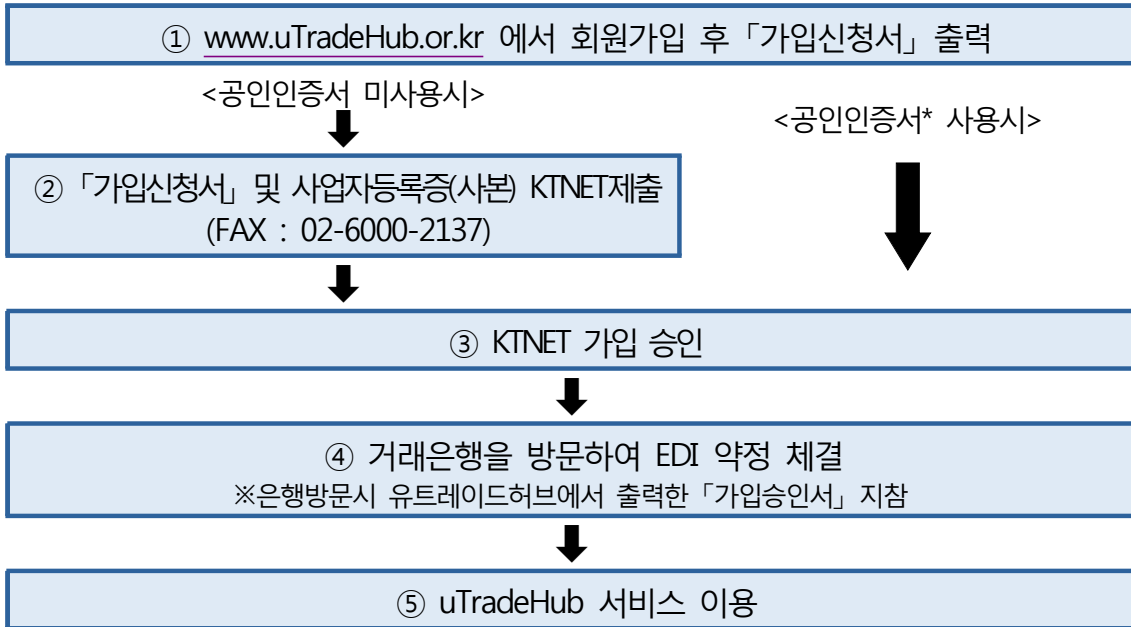
- 전자무역 S/W

- KNET uTrade*Partner 또는 전문 업체의 S/W

※ 전자무역 전문 S/W 이용자는 해당 S/W 공급업체에 문의바람

2. 가입 절차

○ 유티레이드허브(uTradeHub) 가입절차



※ 사용가능 공인 인증서

- 범용 공인인증서(발급기관: KNET,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 전자무역용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KNET)

※ 이용업체는 uTH 등 사용중인 시스템에 거래은행과의 EDI 약정내역 등록 필요

3. 이용 요금

○ 유티레이드허브 이용요금

구분	내용
월별 요금제	기본료 2만원/월+전송료(388원/KB) ※ 수출, 수입, 로컬 등 전체서비스 이용가능 ※ 미이용시 기본료 50%(월1만원)만 부과 / 월 26KB까지 전송료 미부과
건별 요금제 (내국신용장 전용)	구매자절차 1회(개설→조건변경→물품수령증명서발급): 3,000원 공급자절차 1회(통지→세금계산서발행→물품수령증명서수령→매입추심의료): 3,000원 ※ 각 단위업무별로 전자문서 1건 초과시 추가요금 부과(예정)

※ 유티레이드허브 회원가입시 요금제 선택 가능(요금제 변경 가능)

※ 상기 요금은 변동될 수 있으며 부가세 별도임

○ 기타 전문업체 S/W 및 기업자체 시스템

- 전자무역 S/W 또는 기업 자체시스템 이용시는 전자문서 전송료(388 원/KB) 부과

IV 관련 전자문서

□ 내국신용장 관련 전자문서

번호	업무	전자 문서	From	To	비고
0	은행 EDI 약정 통보서	EDIADV	은행	무역업체	신규
1	물품매도확약서	DOMOFR	수혜자	개설의뢰인	
2	내국신용장 개설신청	LOCAPP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변경
3	내국신용장 오류통보서	GENRES 2AO	개설은행	개설의뢰인	
4	내국신용장 통지	LOCADV	개설은행	개설의뢰인 수혜자	변경
5	내국신용장 조건변경/취소 신청	LOCAMR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변경
6	내국신용장 조건변경 통지	LOCAMA	개설은행	개설의뢰인 수혜자	변경
7	내국신용장 취소통지	GENRES 2DO	개설은행	개설의뢰인 수혜자	신규
8	세금계산서 발행	VATBIL TAXINVOICE	수혜자	개설의뢰인	
9	물품수령증명서 발급	LOCRCT	개설의뢰인	수혜자	변경
10	판매대금 추심의뢰	APPSPC	수혜자	매입추심은행 (개설은행)	변경
11	판매대금추심 처리결과통지	SPCNTC	매입추심은행	수혜자	
12	판매대금추심의뢰서 도착통지	LDANTC	개설은행	개설의뢰인	
13	지급지시서	PAYORD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14	출금통지	DEBADV	개설은행	개설의뢰인	
15	입금통지	CREADV	매입추심은행	수혜자	
16	계산서	FINBIL	매입추심은행	수혜자	

□ 전자문서 변경사항 (신규 2종, 변경 6종)

문서명	전자 문서	From→To	주요 내용	비고
은행 EDI약정 통보서	EDIADV	은행→업체	은행이 업체의 EDI 약정정보를 업체에게 전송	신규
물품매도확약서	DOMOFR	공급자→구매자		변경 없음
내국신용장 개설신청서	LOCAPP	구매자(개설의뢰인) →개설은행	·물품매도확약서 입력 '필수'→'선택'으로 변경 ·수혜자 이메일 항목 추가 ·내국신용장 종류표시 변경 (원화표시, 외화표시, 외화부기원화) ·허용오차 항목 추가 ·대표공급물품 HS부호 항목 자릿수 정의	변경
내국신용장 통지서	LOCADV	개설은행 →구매자/공급자	·물품매도확약서 입력 '필수'→'선택'으로 변경 ·수혜자 이메일 항목 추가 ·내국신용장 종류표시 변경 (원화표시, 외화표시, 외화부기원화) ·허용오차 항목 추가	변경

			·AUT항목 입력 '필수'→'선택'으로 변경 ·대표공급물품 HS부호 항목 자릿수 정의	
내국신용장 조건변경신청서	LOCAMR	구매자(개설의뢰인) →개설은행	·내국신용장 취소신청 기능(코드) 추가 ·물품매도확약서 입력 '필수'→'선택'으로 변경 ·수혜자 이메일 항목 추가 ·내국신용장 종류표시 변경 (원화표시, 외화표시, 외화부기원화) ·허용오차 항목 추가	변경
내국신용장 조건변경통지서	LOCAMA	개설은행 →구매자/공급자	·물품매도확약서 입력 '필수'→'선택'으로 변경 ·수혜자 이메일 항목 추가 ·내국신용장 종류표시 변경 (원화표시, 외화표시, 외화부기원화) ·허용오차 항목 추가 ·AUT항목 입력 '필수'→'선택'으로 변경	변경
내국신용장 취소통지	GENRES_2DO	개설은행 →구매자/공급자	·취소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개설은행의 취소 통보	신규
세금계산서	VATBIL	공급자→구매자		변경 없음
물품수령증명서 (인수증)	LOCRCT	구매자 →공급자(수혜자)	·세금계산서 입력항목 '필수'→'선택'으로 변경	변경
판매대금 매입추심의뢰서	APPSPC	공급자(수혜자) →매입추심은행	·구매자 이메일 항목 추가 ·내국신용장 종류표시 변경 (원화표시, 외화표시, 외화부기원화) ·첨부서류 '세금계산서'에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항목 설명 추가 ·물품수령증명서상 대표공급물품 HS부호 항목 자릿수 정의	변경
매입처리결과통지	SPCNTC	매입추심은행 →공급자(수혜자)	·수혜자의 매입추심의뢰에 대한 오류통보 사: 매입추심은행은 SPCNTC_2CR(기능코드 9)를 수혜자에게 전송 ·승인된 매입추심의 취소 : 매입추심은행은 SPCNTC_2CQ(기능코드 1)를 수혜자에게 전송	변경 없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도착통지	LDANTC	개설은행 →구매자(개설의뢰인)		변경 없음

□ 전자문서 적용 일정

구분	일정
전자문서 배포	'13.7.26, '13.9.24
은행 연계 테스트	'14.1.2~'14.1.14
변경 전자문서 서비스적용	'14.1.17(금) ※ 도쿄미쓰비시은행, 미즈호은행, 인도해외은행, 인도해외은행 등 일부 외국계은행은 2월 14일부터 적용
매입추심 전자화 전면시행	'14.2.14(금)

□ 전자문서 표준 배포안내

- KNET uTradeDocs 서비스에서 최신 전자문서표준 다운로드 가능
 - 주소: www.ustradedocs.or.kr
- 배포 내용
 - 내국신용장 관련 EDI 미그, XML 스키마, WINMATE(samfile), GETMATE, GXML 등

별첨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2013.11.06. 총재결재 금융기획팀-9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11조 및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 제4조에 따라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금융기관별한도 배정에 반영하는 금융기관의 무역관련대출과 이와 관련된 지급보증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역금융의 범위) ①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금융기관별한도 배정에 반영하는 금융기관의 무역관련대출(이하 “무역금융”이라 한다)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취급한 원화대출을 말한다.

② 무역금융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역금융 취급실적은 금융기관별한도 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1.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제1항에서 정하는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무역관련대출
2.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최종부도거래처로 분류된 기업체에 대한 무역관련대출
3. 폐업업체에 대한 무역관련대출

제3조(용자취급은행) 이 세칙에 따른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관련 지급보증은 각 외국환은행이 취급한다.

제4조(적정용자) 외국환은행은 무역금융 용자신청업체의 수출실적과 수출능력, 수출 또는 국내공급에 필요한 실제 소요금액과 기간 및 그 밖의 수출관련금융 용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정수준의 무역금융이 용자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무역금융

제5조(용자대상) ① 무역금융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취급한다.

1. 수출신용장 또는 지급인도(D/P)와 인수인도(D/A) 조건 및 그 밖의 수출관련계약서(이하 “수출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물품(「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자
2. 제3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된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화획득용원료·물품 등구매확인서(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에 따라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공급(수탁가공 포함,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방식에 의한 수출 또는 공급실적(이하 “수출실적”이라 한다)이 있는 자로서 동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
4. 그 밖에 외화획득, 수출증대 등을 위하여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이 정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계무역방식에 따른 수출은 용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용자금의 구분) ① 무역금융은 자금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취급(이하 “용도별금융”이라 한다)하거나 자금용도의 구분 없이 일괄하여 취급(이하 “포괄금융”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용도별금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제조 가공하거나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하 “생산자금”이라 한다)
2. 수출용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에 따라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하 “원자재자금”이라 한다)
3.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완제품을 내국신용장에 따라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하 “완제품구매자금”이라 한다)

③ 포괄금융은 전년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미화 2억 「달러」 미만인 업체에 대하여 취급할 수 있다.

제7조(용자방법) 무역금융은 제6조제2항의 자금별(포괄금융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한다)로 해당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및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등(이하 “수출신용장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취급(이하 “신용장기준금융”이라 한다)하거나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취급(이하 “실적기준금융”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8조(용자한도) ① 외국환은행은 실적기준금융을 이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용자한도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자한도는 해당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용도별금융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자금별로 산정하고 포괄금융은 업체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9조(용자금액) ① 신용장기준금융을 이용하는 업체(이하 “신용장기준금융 이용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등의 외화금액에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이라 한다)의 용자취급일 전월 평균환율(이하 “평균매매기준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범위에서 용자한다.

② 실적기준금융을 이용하는 업체(이하 “실적기준금융 이용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금액 범위에서 용자한다.

1. 생산자금 및 포괄금융은 제8조의 용자한도에 평균매매기준율을 곱한 금액
2.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구매자금은 내국신용장에 따라 발행된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수입어음 및 수입대금(수입화물운임을 포함한다)의 외화금액에 평균매매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이 원화로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용자시기) ① 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자금소요시기에 맞추어 취급하여야 한다.

1. 생산자금 및 포괄금융은 필요할 때 수시로 용자할 수 있다.
2. 원자재자금은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수와 동시에 수입어음을 결제하거나 수입대금을 지급할 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할 때 용자한다. 다만, 수입화물운임을 따로 지급하는 경우 동 운임은 지급할 때 용자할 수 있다.
3. 완제품구매자금은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할 때 용자한다.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내국신용장 및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일람불 수입신용장과 관련된 지급보증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구매자금을 용자할 수 있다.

제11조(용자기간) 용자기간은 자금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외국환은행이 정한다.

제3장 내국신용장

제12조(개설대상) ① 외국환은행은 수출용 수입원자재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구매(임차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 내국신용장의 개설신청과 내국신용장 개설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한 전자무역문서(이하 “전자문서교환방식”이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내국신용장 수혜자는 해당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또다른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개설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신용장은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또는 제8조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정하는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구매자금의 용자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다.

1. 원자재내국신용장 : 원자재 구매를 위한 내국신용장
2. 완제품내국신용장 : 완제품 구매를 위한 내국신용장

제14조(내국신용장의 조건) ① 외국환은행은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1. 양도가 불가능한 취소불능신용장일 것
2. 표시통화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는 것일 것
가. 원화
나. 외화
다. 원화로 하되 개설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외화금액을 부기
3. 내국신용장의 금액은 물품대금 전액으로 하고, 제2호 다목에 따른 내국신용장의 경우에는 금액은 부기외화금액을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매입일(추심시는 추심의뢰일로 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일 것
4. 물품의 인도기일은 대응수출 또는 물품공급이 원활히 이행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책정된 것일 것
5. 유효기일은 물품의 인도기일에 최장 10일을 더한 기일 이내일 것. 다만, 원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하여 개설되는 내국신용장의 유효기일은 대응되는 원수출신용장 등의 선적 또는 인도기일 이전이어야 한다.
6. 서류제시기간은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부터 최장 5영업일 범위에서 책정된 것일 것.
7.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형식은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고, 개설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며 일람출

급식일 것

8.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대금결제방식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일 것

- 가. 일람불 내국신용장 : 개설의뢰인이 자체자금으로 결제하는 방식
- 나. 기한부 내국신용장 : 개설은행이 용자하여 결제하는 방식

9.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발행조건은 원수출신용장 매입조건부 결제 등 수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닐 것. 다만, 선박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산업설비의 수출을 위하여 개설되는 완제품내국신용장의 경우에는 원수출신용장 등의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제조공정별 분할지급조건으로 할 수 있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외의 조건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제정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를 준용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된 내국신용장의 조건은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내국신용장의 관계당사자(개설의뢰인, 수혜자 및 개설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통지)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외국환은행은 내국신용장을 전자문서로 개설하였다는 사실을 내국신용장 수혜자에게 통지하고, 개설된 내국신용장을 수혜자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16조(내국신용장의 결제) ①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거절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제시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 따라 결제하여야 한다.

- 1.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추심의뢰일이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의 유효기일을 경과한 경우
- 2. 전자문서교환방식 물품수령증명서상의 물품명세가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상의 대표물품명세와 불일치한 경우
- 3. 판매대금추심의뢰서와 전자문서교환방식 물품수령증명서가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상의 기타 조건 등과 불일치한 경우

② 개설은행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거절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그 내국신용장의 관계당사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 따라 결제할 수 있다.

제4장 사후관리 및 제재

제17조(용자금의 관리) 용자취급은행은 무역금융이 지정된 용도 외의 다른 목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용자금의 회수) ① 무역금융은 용자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당해 용자대상 수출관련 대금이 입금된 때 동 대금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실적기준금융의 경우에는 용자기간 만료 시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적기준 생산자금, 실적기준 포괄금융의 경우에는 용자기간 만료 시 새로이 산정된 용자한도 범위에서 회전 대출할 수 있다.

제19조(제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관련 지급보증에 관한 제재대상이 된다.

- 1. 용자대상증빙, 관련계약서, 물품수령증명서, 그 밖의 용자관계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 2.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인수를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물품을 인수하고 물품수령증명서를 공급자발행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고 있어 내국신용장 수혜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고한 경우
- 3.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이 물품을 인수하고 물품수령증명서를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을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 다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동일한 수출 건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중복 발급하거나 사용하는 등으로 제8조에서 정한 용자한도를 초과하여 무역금융을 지원받는 경우

② 외국환은행은 제1항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한국은행 및 다른 외국환은행에 제재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은행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할 수 있으며, 동 제재 감면 사유 및 내용을 한국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업체 : 1개월 이상 1년 이내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관련 지급보증 수혜자격 정지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체 : 경고

다만, 동 경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업체 : 1개월간 내국신용장의 개설자격 정지

3. 제1항제3호에 해당(제2호의 경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업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제재

가. 연중(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차 발견 시 : 경고

나. 연중 2차 발견 시 : 관련금융 용자한도의 5% 해당 금액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동 용자한도에서 차감

다. 연중 3차 발견 시 : 관련금융 용자한도의 15% 해당 금액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동 용자한도에서 차감

라. 연중 4차 이상 발견 시 : 관련금융 용자한도의 25% 해당 금액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동 용자한도에서 차감

마. 나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이 차감대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을 해당 용자한도에서 차감

③ 제2항에 따라 제재사실을 통지받은 외국환은행은 해당 업체에 대하여 통지받은 제재내용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이 세칙 및 이의 시행을 위한 절차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대출한도 감축 또는 기존대출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0조(자료제출) ① 금융기관은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이 세칙에 따른 무역금융 취급상황을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무역금융과 관련된 세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위임)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이 정한다. 다만, 제19조제4항 및 제20조제2항에 관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이 정한다.

부 칙 <2012. 2. 23>

이 세칙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6>

이 세칙은 2013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 〇〇>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는 2014.2.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외국환은행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물품수령증명서가 2014.2.13일까지 서류로 발급된 경우에 한정하여 내국신용장 환어음을 이용해 서류교환방식으로 2014.2.24일까지 내국신용장을 결제할 수 있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절차는 금융기관이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취급하는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관련 지급보증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정용자) ① 외국환은행은 무역금융 용자신청업체가 무역어음을 할인받거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대출(인도전금융) 등을 용자받는 경우에는 적정수준의 무역금융을 용자함으로써 중복금융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은행은 무역금융 이용업체가 용자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무역금융이 과다하게 용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을 용자받는 경우 무역금융의 용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3조(동일 수출신용장 등에 대한 중복금융 취급의 방지) ① 외국환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출신용장 등 무역금융의 용자대상 증빙서류의 뒷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출신용장 등에 대한 용자내용(취급일자, 금액, 기일, 취급점명)
2. 무역어음의 인수 취급내용(취급일자, 금액, 기일, 취급점명)
3. 관련 수입신용장 및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 및 결제 내용
4. 수출 또는 공급대금 입금상황(매입 또는 입금일자, 금액, 취급점명 등)

② 외국환은행은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실적 산정 시 해당 구매확인서의 뒷면에 수출실적 산입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의 범위) 세칙 제19조제1항제3호의 중소기업은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세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장 무역금융

제5조(포괄금융 이용업체 선정 등) ① 포괄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해당 업체의 수출실적 관리 등을 담당할 외국환은행(1개 영업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주거래외국환은행”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거래외국환은행은 세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의 신청에 따라 동 업체를 포괄금융 이용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수출실적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는 동 기간 동안의 수출실적이 미화 2억 「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포괄금융 이용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주거래외국환은행은 제2항에 따라 선정한 포괄금융 이용업체의 자격을 매년 1월중에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재심사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④ 포괄금융 이용업체의 주거래외국환은행으로 신규 또는 변경 지정되어 포괄금융 이용업체를 선정한 주거래외국환은행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동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업체가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관련 지급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다른 외국환은행(이하 “부거래외국환은행”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부거래외국환은행은 제4항에 따라 주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포괄금융 이용대상 선정통보를 받은 후 해당 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관련 지급보증을 취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주거래외국환은행이 포괄금융 이용업체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동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업체의 부거래외국환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용자대상) 세칙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역금융 용자대상에 포함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 또는 원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이하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물품,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에 공급하고자 하는 자
 - 가. 외국정부,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된 물품, 건설 및 용역공급계약서
 - 나. 선박 건조공급(개조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산업설비의 수출을 위한 계약서
 - 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따라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 건설 및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체결된 계약서
 - 라.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물자, 용역 및 공사 등을 외국에 무상으로 원조하는 경우 동 물자, 용역 및 공사에 관한 계약서

2. 「관세법」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자가생산품을 외국인에게 외화로 판매한 실적이 있거나 외항항공, 외항해상운송 또는 선박수리업체로서 과거 외화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등 외화판매실적 및 외화입금실적을 기준으로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발급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를 보유한 자
가. 수출거래 당사자, 물품거래 조건 등의 기재 등을 통하여 은행이 발급사실을 확인한 국제기구 발급 구매주문서

나.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서를 제공한 국제기구 발급 구매주문서

제7조(용자대상 수출실적) ① 세칙 제5조제1항 및 세칙 제8조에서 정하는 수출실적은 본선인도(FOB)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실적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수출실적 인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무역어음이 인수취급된 수출신용장 등에 따른 수출실적은 해당 인수취급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용자대상 수출실적에 포함한다.

③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이하 “위탁가공무역”이라 한다)의 경우 용자대상 수출실적은 위탁가공무역에 소요되는 국산원자재를 무상으로 수출한 실적으로 한다. 다만, 가공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국산원자재를 구매하여 가공하지 않고 수출한 실적은 생산자금 및 포괄금융 용자한도의 산정대상이 되는 수출실적에서 제외한다.

④ 구매확인서에 따른 수출실적은 용자한도관리 외국환은행이 해당 업체로부터 징구하는 구매확인서 및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6조제3호에 따른 국제기구 발급 구매주문서의 수출실적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수출신용장 등의 용자대상금액) ① 수출신용장 등의 용자대상금액은 해당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중에서 본선인도(FOB)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의 경우에는 신용장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선수금영수조건 수출신용장 등의 용자대상금액은 해당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에서 이미 영수한 선수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무역어음이 인수취급된 수출신용장 등의 경우 용자대상금액은 해당 인수취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회전신용장의 경우 용자대상금액은 해당 신용장의 액면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신용장 등의 경우 용자대상금액은 위탁가공무역에 소요되는 국산원자재를 무상으로 수출하는 금액 범위로 한다. 다만, 가공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국산원자재를 구매하여 가공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금 및 포괄금융 용자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수출대금을 수입대금과 상계처리하는 경우 동 수출대금은 용자대상 수출실적에서 차감한다.

⑦ 제6조제3호에 따른 국제기구 발급 구매주문서의 용자대상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9조(미 「달러」화 이외 통화의 미화 환산기준) ① 원화로 표시된 수출신용장 등의 경우 용자대상금액은 해당 원화금액을 용자취급 당일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미 「달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 수출신용장 등에 미 「달러」화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다.

② 미 「달러」화가 아닌 외국통화로 표시된 수출신용장 등의 경우 용자대상금액은 용자취급 당일의 해당 통화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재정의된 매매기준율 및 미 「달러」화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수출실적의 인정시점)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출실적의 수출방식별 인정시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출신용장 및 내국신용장 : 해당 수출환어음 또는 내국신용장 판매대금추심의뢰서가 매입(추심의뢰된 때를 포함한다)된 때

2. 수출계약서 및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 해당 수출 또는 공급대금이 입금된 때. 다만, 선수금영수방식 수출의 경우에는 동 수출이 이행된 때

3. 구매확인서 : 당해 물품관련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환어음 또는 내국신용장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매입금액중 소정기일까지 미회수되어 부도처리한 부분은 부도발생월의 매입실적에서 차감하고, 부도처리 후 입금된 부분은 해당 입금월의 매입실적에 재산입하여야 한다.

제11조(수출실적 관리) ① 외국환은행은 거래업체별로 수출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포괄금융 이용업체의 부거래외국환은행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출실적관리카드」를 매년 1월 10일까지 주거래외국환은행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주거래외국환은행은 매년 1월중에 부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수출실적관리카드」를 종합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수출실적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업체가 주거래외국환은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관리카드」 사본을 지체없이 새로이 지정된 주거래외국환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

제12조(수출실적의 승계 및 이관) ① 외국환은행(포괄금융의 경우 주거래외국환은행을 말한다)은 업체간 영업의 양수도, 기업의 합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업체간 수출실적의 승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수출실적의 승계를 인정한 외국환은행은 무역금융이 중복취급되지 않도록 승계된 수출실적에 대응하는 용자한도를 해당 업체의 용자한도에서 차감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은행은 업체의 요청에 따라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수출실적을 다른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이관 받아 해당 업체의 용자한도 산정 시 동 수출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수출실적을 이관한 외국환은행은 무역금융이 중복취급되지 않도록 이관된 수출실적에 대응하는 용자한도를 해당 업체의 용자한도에서 차감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자한도 관리) ① 수입대행업체가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신용장을 개설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용장의 개설액과 동 수입대금의 결제를 위한 원자재자금의 용자취급액은 실수요자의 원자재자금 한도관리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세칙 제8조의 용자한도에는 해당 원자재의 일괄불 수입신용장개설분(지급인도조건 및 대금교환도 조건(CAD 및 COD)에 의한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승인분,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상의 수입금액을 말한다)과 내국신용장 개설분을 포함한다.

제14조(용자취급기준) ①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구매자금의 경우 해당 수입신용장 또는 내국신용장이 용자한도 범위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해당 어음 등의 결제시점에서 용자한도가 부족하더라도 용자할 수 있다.

② 외국환은행은 업체가 용자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용자방법의 변경시점에서 기취급된 대출금 및 지급보증잔액이 용자방법 변경 대상자금의 용자한도를 이미 초과한 경우에는 소정 용자한도로 축소될 때까지 신규 금융을 취급할 수 없다.

③ 중고품, 농수산물 및 자가생산한 원자재 등과 같이 상거래 관례상 내국신용장으로 조달하기 곤란한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을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은 생산자금으로 용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생산자금에는 수출용 중고품의 수리 및 수출용 농수산물의 비축에 필요한 자금을 포함할 수 있다.

⑤ 선수출 후수입을 위하여 개설된 수입신용장은 원자재자금의 용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수출(외화표시 물품공급을 포함한다)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수출대금의 입금 시까지 이미 개설된 수입신용장에 대하여 원자재자금을 취급할 수 있다.

⑥ 수입화물운임에 대하여 원자재자금을 별도로 취급하는 경우의 용자대상금액은 해당 선박회사 또는 대리점이 발급한 운임증명서의 운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내국신용장 판매대금추심의뢰서 매입은행의 제한) ① 하나의 수출신용장 등과 관련된 무역금융의 취급 및 수출대금의 영수는 동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 실적기준금융 이용업체 및 포괄금융 이용업체가 발행한 수출환어음 또는 내국신용장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매입과 추심은 동 업체에 대한 용자취급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출 또는 공급대금을 영수한 실적은 해당 업체의 수출실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조(무역금융 이용방법 제한)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 제10조에 따라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무역어음을 이용하는 업체가 무역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적기준금융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제3장 내국신용장

제17조(개설대상) ① 내국신용장 개설이전에 이미 물품공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대금 결제를 의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다.

② 국내업자간의 매매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어획물을 수집하여 직접 수출하는 경우라도 동 거래의 특수성에 비추어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수출입업자가 원자재 및 완제품을 임가공계약에 따라 위탁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수탁가공업자에 대한 가공임을 지급하기 위하여 내국신용장(이하 “원자재임가공 내국신용장” 및 “완제품임가공 내국신용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④ 제8조제2항의 선수금영수조건 수출신용장 등의 경우 동 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해당 원자재 및 완제품 조달을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구매자금의 용자금액은 동 선수금을 제외한 금액 범위로 한다.

제18조(내국신용장 개설 시의 징구서류) 외국환은행이 내국신용장의 개설 시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징구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급자발행 물품매도(수탁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약서. 다만, 실적기준금융 이용업체의 신청

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해당 내국신용장의 개설근거가 되는 원수출신용장 등. 다만, 개설의뢰인이 실적기준금융 이용업체(실적기준 포괄금융 이용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내국신용장 개설금액)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하기 위한 내국신용장의 개설금액에는 해당 공급물품의 제조·가공에 투입된 수입원자재 및 수입원자재와 관련된 관세 등 제공과금 부담액을 포함할 수 있다.

제20조(내국신용장의 개설근거 및 용도의 표시)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외국환은행은 해당 내국신용장의 앞면에 <별표>에 따라 동 내국신용장 개설근거가 된 원수출신용장 등의 내용과 내국신용장의 용도를 나타내는 문언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판매대금추심의뢰서 결제 시의 전송 전자문서) ① 외국환은행이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전송된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추심 또는 결제 시 전송받아야 할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대금추심의뢰서<별지 제4-1호 서식>
2. 물품수령증명서<별지 제4-2호 서식>. 다만 물품수령증명서는 공급자발행 세금계산서 건별로 대응하여 발급되어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상 전송가능한 공급자발행 세금계산서. 다만,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과 내국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은 일치하여야 하며, 완제품내국신용장의 수혜자가 수출대행위탁자인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물품명세가 기재된 송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내국신용장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수출용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분할 공급받는 경우에는 매 반월 또는 월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 기간 중 분할 공급 시마다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일괄하여 하나의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칙 제14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개설된 완제품내국신용장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자문서 또는 서류를 전송받거나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 시 수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 징구를 아니할 수 있으며, 물품인도 시 수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전자문서 또는 서류를 전송받거나 징구하여야 한다.

1. 판매대금추심의뢰서<별지 제4-1호 서식>
2. 개설은행이 발급한 원수출신용장 등의 대금입금증명서
3. 개설의뢰인이 발급한 공정 또는 제조확인서
4. 공급자발행 세금계산서 사본

제22조(서식) 내국신용장 개설신청서의 양식은 각 외국환은행의 소정 양식으로 하며, 내국신용장의 양식은 <별지 제4-3호 서식>으로 한다.

제4장 보 칙

제23조(자료제출) ① 외국환은행은 세칙에 따라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관련 지급보증에 관한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제재를 감면한 때에는 동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한국은행 취급점 및 각 외국환은행(본점기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매월 무역금융의 취급상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14. 1. >

이 절차는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내국신용장의 개설근거별 용도표시방법

개 설 근 거	용 도	표시방법		비 고	
		표 시 문 언	표시장소		
I. 원자재내국신용장^{주)}					
1. 신용장기준원자재 자금이용업체 및 신용장기준포괄금 용이용업체의 개설의뢰분	1. 원자재구매	원자재	“용도”란	“원수출신용장내용” 란에 원수출신용장 등의 내용 기재	
	2. 원자재임가공위탁	원자재임가공 완제품임가공	” ”		” ”
	2. 실적기준원자재자 금이용업체 및 실 적기준포괄금융 이용업체의 개설 의뢰분	1. 원자재구매	원자재(실적)	”	
		2. 원자재 임가공위탁	원자재임가공 (실적)	”	
		3. 완제품 임가공위탁	완제품임가공 (실적)	”	
	II. 완제품내국신용장				
1. 신용장기준완제품 구매자금이용업체 의 개설의뢰분	1. 완제품구매	완제품	”	“원수출신용장내용” 란에 원수출신용장 등의 내용 기재	
	2. 수출대행	완제품 (수출대행)	”		”
2. 실적기준완제품구 매자금이용업체의 개설의뢰분	1. 완제품구매	완제품(실적)	”		
	2. 수출대행	완제품(수출대 행)(실적)	”		

주 : 위탁가공무역에 소요되는 국산원자재를 내국신용장에 의해 구입하는 경우는 현행 표시문언인 “원자재”앞에 “(위탁가공)”이라 표시

별 지 서 식 목 록

- 제1-1호 포괄금융 주거래외국환은행(신규.변경)지정 및 이용업체 선정 신청서
- 제1-2호 포괄금융 이용업체의 선정취소 통보서
- 제 2 호 수출실적관리 「카드」
- 제3-1호 수출실적승계 승인 신청서
- 제3-2호 수출실적이관 승인 신청서
- 제4-1호 판매대금추심의뢰서
- 제4-2호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
- 제4-3호 취소불능 내국신용장
- 제 5 호 무역금융관련 제재조치내용 통보
- 제 6 호 무역금융 취급상황

<별지 제1-1호>

<p>포괄금융 주거래외국환은행(신규·변경)지정 및 이용업체 선정 신청서</p>			
은행		부(지점)장 귀하	
<p>귀행을 당사의 주거래외국환은행으로 (신규, 변경) 지정하고 (신용장기준, 실적기준) 포괄금융 이용업체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p>			
(신규, 변경) 지정은행	은행	부(지점)	
변경전 주거래외국환은행	은행	부(지점)장	(인)
<p>년 월 일</p>			
(신청인) 업 체 명 :			
대표자성명 :	(인)		
본사소재지 :	(전화번호:)		
업 종 :	(사업자등록번호 :)		
무역업신고번호 :			
수출실적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width: 10px; height: 10px; margin-right: 5px;"></div> 전년도(년도) : US\$ </div>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width: 10px; height: 10px; margin-right: 5px;"></div> 과거 1년간(부터 까지) : US\$ </div>		
<p>위의 신청사항을 승인함</p>			
<p>년 월 일</p>			
은행		부(지점)장 (인)	
사본수신처 :	은행	부(지점)장	

<별지 제1-2호>

포괄금융 이용업체의 선정취소 통보서

은행 부(지점)장 귀하

아래 업체에 대하여 (신용장기준, 실적기준) 포괄금융 이용업체의 선정을 취소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 화 번 호 :)
취 소 사 유	

년 월 일

은행 부(지점)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수출실적¹⁾관리「카드」
(년도)

업 체 명	
포괄금융 이용업체의 주거래외국환은행	
작 성 은 행	

(단위 : US\$)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누계
수 출 신 용 장	매 입 액 2)	(1)													
수출계약서 및 외화표시물품 공급계약서	입 금 액	(2)													
내 국 신 용 장	매 입 액 2)	(3)													
구 매 확 인 서	공 급 액 3)	(4)													
수출대금 미회수액	수출신용장 및 내국신용장 매입액중 부도처리분(-)	(5)													
	부도후 입금분(+)	(6)													
「절차」제6조 제2호에 의한 수출실적		(7)													
용자대상 수출실적 (1+2+3+4+5+6+7)		(8)													

- 주 : 1) 수출입은행의 인도전금융을 이용한 수출, 중계무역수출 등 용자대상이 되지 않는 수출 실적은 제외함
 2) 추심의뢰분(판매대금추심의뢰서 포함)은 매입액에 포함하여 기입함
 3) 구매확인서 및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기입함
 4) 기 타 :
 .무역여음 인수취급된 수출신용장 등에 의한 수출실적은 당해 인수취급분을 제외하고 기입함
 .위탁가공무역에 소요되는 국산원자재를 구매하여 가공하지 않고 수출한 실적 포함
 (다만, 생산자금 및 포괄금융의 용자한도 산정대상 수출실적에서 제외)

<별지 제3-1호 서식>

수출실적승계 승인신청서

은행 부(지점)장 귀하

다음과 같이 수출실적의 승계를 신청합니다.

	피 승 계 인	승 계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무역업신고번호		
승 계 사 유		
승계대상 수출실적	20 . - 20 . 중 수출실적 : US\$	

- 첨부서류 : 1. 설립, 합병 등 승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출실적 승계인정 대상기간중 월별 수출실적 명세표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의 신청을 승인함

 년 월 일
 은행 부(지점)장 (인)

<별지 제3-2호 서식>

수출실적이관 승인신청서

은행 부(지점)장 귀하

다음과 같이 수출실적의 이관을 신청합니다.

이관전 외국환은행	
이관후 외국환은행	
이 관 사 유	
이관대상 수출실적	20 . - 20 . 중 수출실적 : US\$

첨부서류 : 수출실적 이관인정 대상기간중 월별 수출실적 명세표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위의 신청을 승인함

년 월 일

은행 부(지점)장 (인)

<별지 제41호 서식>

판매대금추심의뢰서

(내국신용장용)

전자문서번호 :

신청일자 :

아래와 같이 귀 행에 판매대금의 추심을 의뢰합니다.

< 신 청 내 용 >

추심은행 : ____은행 ____지점
추심금액 :
원화환산금액 :
적용환율 :

추심관련 서류	전자문서번호	발급은행	발급번호	발급일
- 내국신용장				
- 물품수령증명서		-		
- 세금계산서		-		

<추심대금 지급관련>

지급받을 은행명 : ____은행 ____지점
계좌번호 :
금액 :
예금주 :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기재

< 신 청 인 >

신청인 :
주소 :
전자서명 :

<별지 제4-2호 서식>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

전자문서 번호 : 통지일자 :
 발급번호 : 인수일자 :
 발급일자 : 인수금액 :
 공 급 자 :

< 인수물품 내역 >

대표공급물품의 HS부호 :

물품/규격	수량	단가	금액
TOTAL			

<관련 내국신용장 내역>

개설은행 : 인도기일 :
 개설은행 전자서명 : 유효기일 :
 신용장 번호 : 참조사항 :
 신용장 금액 :

< 물 품 수 령 인 >

기 관 명 :
 대표자명 :
 전자서명 :

<세금계산서 내역>

승인번호 : 작성일 :
 공급가액 : 세액 :

<세칙 16조제2항 동의사항 >

* 동내용은 나머지 관계당사자(수혜자 및 개설은행) 전원동의 시에만 유효함

* 유의사항

- 이 물품수령증명서는 관련세금계산서 건별로 발급하여야 함
 다만, 내국신용장 조건에 따라 수출용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분할 공급받는 경우에는 매 반월 또는 월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 기간 중 분할공급 시마다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일괄하여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이 물품수령증명서는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함
 다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이 물품수령증명서의 물품명세는 관련내국신용장상의 대표물품명세와 일치하여야 함
 다만, 일치 여부 확인은 HS부호를 기준으로 함
- 이 물품수령증명서의 물품 인수일자는 관련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를 모두 기재하여야 함**

이 전자문서는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된 전자문서교환방식 물품수령증명서로서 이 문서를 전송받은 수혜자는 같은 법률 시행규정 제12조제3항의 별표4에 따라 물품수령증명서 여백에 정당발급문서임을 표시하는 적색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3호 서식>

취소불능 내국신용장

전자문서 번호 : _____ < 개 설 내 역 > _____ 통지일자 :

개설은행 :
 개설일자 :
 신용장번호 :
 개설의뢰인(상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수혜자(상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내국신용장 종류 :
 개설외화금액 :
 개설원화금액 :
 매매기준율 :
 물품매도화약서 번호 :
 물품인도기일 :
 유효기일 :
 제출서류 : 물품수령증명서 통
 공급자발행 세금계산서 사본 통

기타 구비서류

당행은 귀하(사)가 위 금액의 범위에서 상기의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대금 전액의 일괄출급식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취소불능내국신용장을 개설합니다. 당행은 이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판매대금추심의뢰서가 당행에 제시된 때에는 이를 이의없이 지급할 것을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발행인에게 약속합니다.

대표공급물품명 : (HS부호 : _____)
 분할인도 허용여부 :
 서류제시기간 :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영업일 이내
 개설근거별 용도 :
 기타 :

----- < 원수출신용장 등 내역 > -----

개설근거서류 종류 :
 신용장(계약서) 번호 :
 ----- < 발신기관 전자서명 > -----
 발신기관 전자서명 :

1. 이 전자문서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된 내국신용장으로서 이 문서를 전송받은 개설의뢰인 또는 수혜자는 같은 법률 시행규정 제12조제3항의 별표4에 따라 신용장 여백에 정당발급문서임을 표시하는 적색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이 신용장에 관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제상공회의소 제정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에 따릅니다.

<별지 제5호 서식>

무역금융관련 제재조치내용 통보
(년 월 일)

한국은행 국(본부)장 은행 부(지점)장 (인)
각 외국환은행장 귀하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취급세칙」제19조 제2항에 의거 무역금융관련 제재조치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제재대상업체

업 체 명 : _____
대 표 자 : _____
사업자등록번호 : _____

2. 제재대상(위규)내용 : 「세칙」제19조 제1항 제()호 해당

3. 관련신용장 등 내용 및 제재사유 또는 감면조치내용

신용장 등 변 호		금 액	
개설 은행		개 설 일 자	
개설 의뢰인	(대표자 :)	거래 내용	물품공급일
수 혜 자	(대표자 :)		물품수령증
구체적인 제재 또는 감면조치사유			
제재 내용			
조치 의견			

<별지 제6호 서식>

무역금융취급상황
(년 월말 현재)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귀중

_____은행 _____부장 (인)

1. 대출금 취급상황

가. 자금종류별 취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월말	금월중	금월중	금월말잔액
		잔액(A)	대출액(B)	회수액(C)	(A+B-C)
생산자금	실적기준				
	신용장기준				
	소계				
원자재자금	실적기준				
	신용장기준				
	소계				
완제품구매자금	실적기준				
	신용장기준				
	소계				
포괄금융	실적기준				
	신용장기준				
	소계				
합	계				

주 : 금월말잔액의 합계란은 대차대조표상 무역금융(무역어음대출) 잔액과 일치하여야 함

나. 기업규모별 취급현황(잔액기준)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1~ 5대	6~30대	기 타 대기업 ¹⁾	중소기업 ¹⁾	계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완제품구매 자금					
포괄금융	()	()	()		()
합 계	()	()	()		()

주 : 1)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업체(1~30대 계열기업군 소속업체 제외)에 대한
대출실적만 기재

2) () 내는 업체수

2. 지급보증 취급상황

가. 신용장 종류별 취급현황¹⁾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월말 개설잔액 (A)	금 월 중 취 급 액				금월말개 설잔액 (A+B-C- D-E)
		L/C 개설액 (B)	감액 (취소)액 (C)	자기 자금 결제액 (D)	금융 전환액 (E)	
원자재 수입신용장						
원자재 내국신용장						
완제품 내국신용장						
합 계						()

주 : 1) 원화 및 외화표시 신용장 모두 포함

2) () 내는 업체수

나. 기업규모별 취급현황(잔액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대	6~30대	기 타 대기업	중소기업	계
원자재 수입신용장	일람불					
	기한부					
원자재 내국신용장	일람불					
	기한부					
완제품 내국신용장	일람불					
	기한부					
합 계	일람불					
	기한부					

주 : 원화 및 외화표시 신용장 모두 포함

다. 기업규모별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취급현황(잔액기준)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1~5대	6~30대	기 타 대기업	중소기업	계
원자재 내국신용장	일람불					
	기한부					
완제품 내국신용장	일람불					
	기한부					
합 계	일람불					
	기한부					

주 : 외화표시 내국신용장만 해당

3. 무역금융 취급금리

(단위: 연%)

	잔액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잔액	금리	대출잔액	금리
1~5대				
6~30대				
기 타 대기업				
중소기업				
합 계				

주 : 금액에 의한 가중평균금리

4. 구매확인서 발급상황

(단위 : 건, US\$)

발급건수	발급총액